

# 정 관

학 교 법 인 영 신 학 원

# 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진리탐구, 덕성함양, 자기계발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영신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립 학교) 학교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두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경영한다.

1. 세한대학교
2. 목포과학대학교

제4조 (수익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 수익을 두 대학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업
  2. 의료업
  3.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도매 및 소매업
  6. 출판업, 도소매서비스업, 인쇄업(개정 2021.05.14.), (개정 2021.06.18.)
  7. 건물 및 시설관리업, 서비스업, 경비업(신설 2021.06.18.)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신설 2021.06.18.)
  9. 교육서비스업(신설 2021.06.18.)
  10.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18.02.05.), (개정 2021.05.14.), (개정 2021.06.18.)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명칭과 그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수익사업의 명칭                                          | 주소                           |
|---------------------------------------------------|------------------------------|
| 웰빙 휘트니스 센터(제1항제2호)                                |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 - 1<br>영신관 1층 |
| 웰빙 네일 아트(제1항제3호)                                  |                              |
| 웰빙 매점(제1항제4호)                                     |                              |
| 웰빙 서점(제1항제4호)                                     |                              |
| 영신디자인출판기획(제1항제6호), (개정 2021.05.14.)               |                              |
| 영신관리(주)(제1항제7호)(개정 2021.05.14.), (개정 2021.06.18.) |                              |
| 휴먼케어센터(제1항제8호)(개정 2021.06.18.)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
| 비행교육원(제1항제9호)(개정 2021.06.18.)                     |                              |

- ③ 제1항의 사업체는 필요한 경우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④ 학교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 2. 사업의 종류
  -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⑤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두 대학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관리한다.

제5조(주소) 학교법인의 사무소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에 둔다.

- 제6조(정관의 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기관

### 제1절 임원

제7조(임원)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 8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 2. 감사 : 2명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호선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감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② 임원은 학교법인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두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 임원을 선임하고, 임기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중 4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이사 중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이사 중 2명(이하 “개방이사”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 ⑥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1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감사”라 한다)을 선임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학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2. 「사학법」 제6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사학법」 제5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요구로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제13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세한대학교 대학평의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한 3명
2. 세한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2명
3. 목포과학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2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에 찬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안에(선임 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이사 후보자 및 추천감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개방이사 후보자 : 선임 예정 인원의 2배수
2. 추천감사 후보자 : 선임 예정 인원과 같은 수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방이사 후보자 및 추천감사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가 이 기간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면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제1항의 기간에 개방이사 후보자 및 추천감사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학교법인 및 두 대학의 건학이념에 찬동하는 사람을 개방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학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2022.06.16.)
3. 「사학법」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요구에 따라 해임된 사람으로서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2022.06.16.)
4. 「사학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2022.06.16.)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두 대학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두 대학의 교원·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두 대학의 총장을 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학교법인의 직원 및 두 대학의 교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보충) 임원의 결원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사학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교육부장관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정보를 공개하였을 때
4. 학교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을 때
5. 학교법인의 중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을 때
6.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학교법인 및 두 대학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이를 방조한 때

## 제2절 이사회

제19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두 대학의 총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두 대학의 교원 임용은 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2019.07.18.)
6. 두 대학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회의 회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2018.02.05.)

2.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2018.02.05.)

3.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2018.02.05.)

③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고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여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22.06.16.)

④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심의·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학교법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① 이사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우면 안전별로 심의·의결한 결과를 기록한 회의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는 출석한 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 조서가 2매 이상이면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한 임원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 3인이 대표로 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 간인(間印)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등)** 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를 한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한다.

③ 두 대학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 공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으면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한다.

###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26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두 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이 정관, 두 대학의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20.04.23.)

② 평의원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위촉한다.(개정2020.04.23.)

1. 교원 5명
  2. 직원 3명(정규직원에 한한다)
  3. 조교 1명
  4. 학생 2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 ③ 교원 평의원은 교원 수와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단과대학(계열)에 배정하고, 단과대학(계열)별로 전체 교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배정 인원의 2배수로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④ 직원 평의원은 직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조교 평의원은 조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배정 인원의 2배수로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⑤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를 임명한다.
- 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의원이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8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평의원회의 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의위원회는 제26조 각 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2018.02.05.)

③ 평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장 재산과 회계

### 제1절 재산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별지 목록의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학교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사학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른 가벼운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다.

② 두 대학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③ 학교법인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학교법인 경비의 충당) 학교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두 대학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두 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라 하며,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두 대학이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④ 교비회계의 예산은 총장이 편성하여 평의원회의 자문과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총장이 집행한다.

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34조(세계잉여금의 처리)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 해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한다.

제35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36조(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이사장은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두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두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비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사장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이를 사무소에 계속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지출총괄부
4. 학교법인과 두 대학의 예산서·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 서류
6. 그 밖의 학교법인 소관에 해당하는 서류

②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사업체 관리자와 총장으로부터 매월 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 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38조(적립금)** ① 총장 및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금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분한다.

④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교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⑤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가상각 대상 : 학교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함

2.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

3.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 따름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

5.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 가능

제39조(이월금) ① 총장 및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해산 및 합병

제40조(해산)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해산한다.

1.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2.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할 때

3. 파산하였을 때

4. 「사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② 학교법인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산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학교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 신고를 한 후 학교법인 영화학원에 귀속된다.

제42조(청산인)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43조(합병) 이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교직원

### 제1절 총장

제44조(총장) ① 두 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2019.07.18.)

④ 총장은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⑤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총장 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사학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사학법」 제54조의2의 해임요구에 따라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학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려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에 임명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총장이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절 교원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9.07.18.)
2. 이 정관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9.06.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원인사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팀장이 없으면 교원인사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제53조(교원의 임용) ① 교원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2019.07.18.)

②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 기간 : 6년 이내. 다만, 교수로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교원은 정년까지의 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

4. 업적 및 성과: 연구 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 상담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 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19.07.18.)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2019.07.18.)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라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의 임용 기간이 끝나는 날 4개월 전까지 임용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⑥ 제5항에 따라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면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을 아니 하기로 한 때는 재임용을 아니 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⑦ 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의 신규채용, 재계약, 재임용 등 임용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⑨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용하며,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2019.06.21.)

**제54조(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되며,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5조(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①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두 대학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정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년심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 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 정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임용 보고)** 총장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제57조(임명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8조(명예교수 등)** ① 두 대학에 교원 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대우전임교원, 외래교수, 강의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교수, 연구원, 초빙교수 등을 두고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명예교수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조교)** ① 조교는 총장이 임용한다.

② 조교의 근무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 횟수 등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1조(면직의 사유)**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2019.07.18.)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성과평가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정치 운동을 한 때

나. 수업을 거부하거나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도록 유도한 때

다.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따라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2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교육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총장은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제63조(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9.07.18.)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평가 등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2. 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略式命令이 請求 된 者は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사학법 시행령」 제24조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마.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5. 고의로 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③ 총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2019.07.18.)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시정조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때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이나 뉘우치는 빛이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2019.07.18.)

⑦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64조 (휴직)** ① 교원의 휴직 사유 및 휴직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원이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③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19.07.18.)

④ 별표 1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⑤ 별표 1의 휴직 기간은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별표 1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교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복직된다.

**제66조(휴직 기간의 봉급)** ① 휴직한 교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총장은 교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한 봉급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7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소청심사 청구 기간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제6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9.07.18.)

1. 「사학법」,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 정관 및 학교 규칙 등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교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승급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중에 있을 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⑦ 제6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 대학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2022.01.25.)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22.06.16.)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두 대학의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2022.01.25.)

1. 이사 또는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2022.01.25.)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두 대학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 이사인 징계위원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의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2.01.25.)

4. 제2항의 구성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01.25.)

-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인이사, 외부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1.25.)

제70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5. 제81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72조(제척 및 기피)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으면 그 징계 사건의 심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기피하여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 우려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으면 징계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의 제척 및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여, 징계사안을 심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인 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2022.01.25.)

제73조(징계 사건의 조사 등) ① 총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② (삭제2019.07.18.)

제74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총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제7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를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는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징계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면 지체 없이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2019.07.18.)

③ 총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사학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8.)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8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학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시작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학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징계의결 할 때 정상 고려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 내용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0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총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2019.07.18.)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1항의 기간은 「사학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교원징계위원회 간사) ① 교원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2022.01.25.)

### 제3절 직원

제8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이 학교법인 및 다음 각 호 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공무원 또는 이 학교법인 및 제7호 각 호 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공무원 또는 이 학교법인 및 제7호 각 호 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할 직종에 관한 자격, 면허,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84조(임용) ① 두 대학의 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용(신규 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권, 면직 및 파면)은 시험성적이나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③ 임용의 시험과목,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86조(당연퇴직) 직원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87조(직권 면직)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88조(직위해제) 직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89조(휴직) 직원의 휴직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0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8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2018.05.01.)

② 직원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직원징계위원회를 두며, 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재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며,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직원의 정원) 두 대학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2과 같다.

#### 제4절 교직원의 복무·보수·정년 및 명예퇴직

제92조(복무) ①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교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교직원은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⑦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교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학교 규칙 등으로 정한다.

⑩ 교직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제9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그 밖의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할 수 있다.

제94조(정년) ①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의 정년은 두지 않는다.

1. 교원 : 65세

2. 직원 : 60세

② 교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직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95조(명예퇴직) ①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부터 1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를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④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총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2019.07.1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4.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과 학교법인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직제

## 제1절 학교법인

제96조(학교법인 사무국) 학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사무국을 둔다.

## 제2절 학교

제97조(부총장) ① 두 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을 총장으로 부터 위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8조(교육 조직) ① 두 대학에 단과대학과 대학원(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은 세한대학교에 한한다.

②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부)를 두되, 필요한 경우 본부 직할 학과(부)를 둘 수 있다.

③ 대학원에는 관련 학과 또는 단과대학과 협의하여 계열을 둘 수 있다.

④ 두 대학에 두는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과(부), 계열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부)에 장을 각각 두며, 계열에 선임학과(부)장을 둔다.

⑥ 교무위원(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학과(부)의 장 및 선임학과(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19.07.18.)

제99조(하부조직) ① 두 대학에 하부조직으로 처·실 등을 둘 수 있다.

② 단과대학, 대학원 및 처·실에 과 등을 둘 수 있다.

③ 실장 및 과장 등의 기타보직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19.02.08.)(개정2019.07.18.)

④ 두 대학에 두는 조직 및 분장 사무는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9.02.08.)

제100조(부속시설 등) ① 두 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에 장을 두며, 부속시설 등의 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속시설 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제101조(산학협력단) ① 두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102조(학교기업) ① 두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제103조 (공고) 학교법인이 법령,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4조(학교법인 규칙 및 학칙 등) 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정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두 대학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법인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관 또는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 정관 또는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두 대학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

③ 정관에 위반되는 학칙 및 학교법인 규칙, 정관과 학칙에 위배되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제105조(설립 당초의 임원) 학교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소              |
|-------|-------|-------------|----|-----------------|
| 이 사 장 | 박 영 월 | 31. 9. 10.  | 4년 | 목포시 무안동 5번지     |
| 이 사   | 이 경 수 | 29. 7. 13.  | 4년 | 목포시 무안동 5번지     |
| 이 사   | 김 학 수 | 26. 11. 21. | 4년 | 목포시 산정동 86번지    |
| 이 사   | 정 귀   | 34. 3. 25.  | 2년 | 목포시 산정동 1044-89 |
| 이 사   | 곽 병 용 | 34. 3. 25.  | 2년 | 목포시 죽동 170-133  |
| 감 사   | 박 태 문 | 24. 9. 25.  | 2년 | 목포시 북교동 133번지   |
| 감 사   | 정 동 화 | 36. 2. 12.  | 1년 | 목포시 동명동 1번지     |

제106조(청렴의무 및 행동강령) ① 법인 임원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2022.06.16.)

②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신설2022.06.16.)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 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불공과대학의 소속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공과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대학의 학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불공과대학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공과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단, 그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불공과대학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공과대학교의 보직자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 년 8 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영신학원 녹십자 병원 소속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속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 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불공과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③ (대학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불공과대학교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불공과대학교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대학교의 보직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 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8 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이 정관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목포전문대학과 목포전문대학부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목포과학대학과 목포과학대학부설유치원에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불대학교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대학교 장이 임용한 보직자로 본다. (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시행 당시 대불대학교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대학교 장이 임용한 보직자로 본다. (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직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불대학교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대불대학교 장이 임용한 보직자로 본다.(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제 교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불대학교 교직원은 이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대학원대학교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정관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정관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정관은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기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유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 선임기간의 특례)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행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1조의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7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② (10급 정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제81조 별표2, 별표4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6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2012년 7월 22일 로 전임강사 명칭을 조교수로 변경한다.  
② 제3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이전에 신규임용 및 재임용된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강사에 대한 적용) 개정 정관 제53조 제9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휴직 사유 및 휴직 기간

| 휴직 사유                                                                                           | 휴직 기간                                                                                  |
|-------------------------------------------------------------------------------------------------|----------------------------------------------------------------------------------------|
|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 기간                                                                                |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                                                                                 |
|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                                                                                 |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 그 고용기간                                                                                 |
|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 당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 가능                                                          |
| 8.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 입양자녀 1명 당 6개월 이내                                                                       |
| 9.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3년 이내                                                                                  |
|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 이내                 |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회 이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

[별표 2]

두 대학에 두는 직원의 정원

| 계급            | 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세 한 대 학 교     | 70 | 1  | 2  | 6  | 13 | 11 | 15 | 22 |
| 목 포 과 학 대 학 교 | 51 | 1  | 2  | 3  | 5  | 8  | 12 | 20 |